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16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B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 5.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별표 1]상 성장관리권역[1]에 해당하는 '시흥시 C'에 본점 소재지를 둔 원고는, 2016. 3. 2. 주식회사 경일산업개발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인천 B구'에 위치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300,000,000원에 매수하고서, 2016. 3. 3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표준세율(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 412,000,000원 및 이를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계산된 지방교육세 41,2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바로 접하여 있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30,000,000원에 매수하고서, 2016. 5. 16.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 25,200,000원 및 이를 전제로 하여 계산된 지방교육세 2,52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중과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위 가.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2011. 10. 20.자 보도자료에 첨부된 도면과 '시흥시 C'의 지도상 위치를 비교하여 본 결과 '시흥시 C'은 2011. 10.경 D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과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취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편의상 '취득세'로만 표기한다)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0.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7. 1.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1, 10호증의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 부분 관련[2)]

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G 소속 사무장 F을 통하여 [redacted]시 B구 소속 취득세 담당공무원(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의상 '담당공무원'이라고만 표기한다)으로부터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고,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2)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위 주장은 '피고가 줄곧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하고서 이와 반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주장에 불과해 보일 뿐 구 지방세법령 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소장 제8면 하단, 제9면 상단 참조), ②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원고의 제1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였고(답변서 제6면 참조), 그 이후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들에서 위 주장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위 주장은 철회되었거나 아래 가)항 부분의 주장의 부연 설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호텔업은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업종이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고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보호가치 있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담당공무원이 한 종전 답변을 번복하고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세무지도 때문이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과실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는 취득세 이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 부분 관련

가) 원고는 오직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구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와 마찬가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로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본점이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단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고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보호가치 있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담당공무원이 한 종전 답변을 번복하고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역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세무지도 때문이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과실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도 역시 취득세 이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3)]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령상 중과세율 적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가. 2) 가)항 부분]

가) 구 지방세법령상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 내용

3) 비록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변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설치 이후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본문은 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의 '지점'이 대도시에 설치되기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대도시 부동산 취득인 경우"이거나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대도시 부동산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수도권정비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시흥시 C건물, 제5동 제1층 제522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4. 12. 31.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역인 인천 H 및 I의 지상 건물(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6. 2. 2. 그 취지의 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12. 상호를 'J 호텔', 업태 및 종목을 '일반음식점, 숙박 · 호텔'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서 현재 이를 운영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2016. 1. 29. 지점을 설치하고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2016. 5. 1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연접한 토지로서 대도시 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또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상관없이 그 취득에 관하여서는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설령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원고가 설치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갑 제2호증의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 인천광역시 B구 소속 취득세 담당공무원 K가 2016.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이에 바로 접하고 있는 원고의 지점 건물인 'J 호텔' 사이에 그 경계를 구분짓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J 호텔 버스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 사실, ㉯ 위 담당공무원 K가 2017. 2. 18. 및 2017.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을 재차 조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광버스 4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버스에 'J 호텔'의 투숙객들이 탑승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는 모습이 확인된 사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11호증의1 내지 4)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2부동산 지면에 주차구획선 및 출입유도표시 등이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1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의 지점인 'J 호텔'의 지점 용도, 즉 위 호텔 건물의 고객들을 위한 주차편의시설로 이용되어 왔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가. 1) 가)항 및 가. 2) 나)항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의 존부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표준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려준 '담당공무원'이 누구이고, 그 '담당공무원'이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법인 G 소속 사무장 F에 의하여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처분 이후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인 2017. 3. 14.에 사후적으로 몰래 녹음된 음성파일을 가지고서 작성된 녹취록(갑 제9호증) 내용을 토대로, "담당공무원 E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원고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고,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호텔업은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업종이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도 그 신고·납부 이전에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본점이 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단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취득세 신고·납부할 무렵 자신의 상급자인 K가 F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고 지점이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B구에 있는데 본점용 부동산이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정도로 답변하였고, 자신은 F의 문의에 답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와 더불어 ① [redacted]시 B구는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수리함에 있어서나 납세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두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위 전산시스템과 피고에게 보관되어 있는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표준세율 적용'이 아니라 '대도시지역에서의 법인설립 부동산등기(유예)'라고 입력 내지 가필되어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인식하에 일단 표준세율로서의 신고·납부를 수리하여 두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F이 표준세율 적용에 의한 신고·납부 당시 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당공무원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E나 K 등 담당공무원이 적어도 신고·납부 당시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 지방세법령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다) 한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로서 녹취록(갑 제9호증)의 근거가 된 음성파일이 녹음될 당시(2017. 3. 14.) F에게 호텔업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것은 본인이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흥분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다. F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화내용이 몰래 녹취당하고 있을 당시에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① E가 담당 업무를 하던 중 상급자의 호출로 흥분한 상태에서 폭언을 하던 F을 급작스럽게 대면하여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추궁당하게 된 상황에서 사전준비나 검토의 여유 없이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는 상급자인 K의 지휘·감독 하에 취득세 신고·납부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등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뿐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실체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도 그러한 권한을 갖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내용 등 실체적 사항에 관한 문의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담당상급자인 K에게 전달하여 K가 검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 12. 31.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규정이 더 이상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2016년은 물론 이미 2015. 1. 1.부터 더 이상 호텔업에 대한 중과세율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바, 신고·납부서 수리 등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던 E가 위와 같은 중과세율 면제의 일몰기한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2014년까지 이루어졌던 호텔업 관련 신고·납부서 접수 경험만에 근거하여 감정적으로 위 녹취록상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위 녹취록상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E의 위 증언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그리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직접 수행한 자로서 경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고, F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서 납부고지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하였는데 피고의 전산시스템 상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F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 약 1개월 전 이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먼저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직접 컴퓨터로 발급받아 납부하였는데 피고의 전산시스템 상 지점 설치에 관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발급에 있어서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의 전산시스템과 보관 세액계산서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F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표준세율 적용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 문제 제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E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F 작성의 사실확인서, F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담당공무원을 고압적 태도로 다그치면서 몰래 녹취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작성된 위 녹취록의 증거가치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마) 한편 ①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지 않고 관련 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지정 상황 등에 대한 확인 등이 별도로 필요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호텔업종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 면제에 관한 한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도 한 바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실체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는 상급자인 K의 지휘·감독 하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취득세 신고·납부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등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점, ③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몇 차례 전화로 문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로 예정된 당일(이 사건 제1부동산: 2016. 3. 31., 이 사건 제2부동산: 2016. 5. 16.)에 인천광역시 B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문의한 것이 전부인 점, ④ 게다가 F은 신고·납부 전에 하였던 전화 문의에 있어서 법인명, 본점·지점 설치 상황, 소재지 부동산 위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설명이나 자료 송부 없이 이루어진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답변은 개괄적·일반적 수준의 설명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F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전산시스템 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일단 유예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어 F이 신고·납부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표준세율 적용에 의한 신고·납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령 E 혹은 K 등 담당공무원이 F으로부터의 문의를 받고서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답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귀책사유 존부

나아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은 물론 실체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법무법인 G의 사무장으로서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불과 몇 차례의 전화연락만으로 위와 같은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을 뿐이고, 당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명, 본점·지점 설치 상황, 소재지 부동산 위치, 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나 자료 제시 없이 이루어진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답변은 개괄적·일반적 수준의 설명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로 예정된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B구청에 직접 찾아가 취득 담당공무원을 대면하였는데,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급받는 과정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부동산에의 지점 설치 관련 등록면허세 납부 과정에서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안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전산시스템 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일단 유예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어 F이 신고·납부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표준세율 적용에 의한 신고·납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이 오랫동안 참고서적을 보고 회의를 거치고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고서 원고 측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 법무법인 G 측에 연락하여 소속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구하거나 자문을 구한 적은 없고, 법무법인 G 역시 자체적으로 그와 관한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그 사무 일체를 법무법인 G에게 맡겨둔 채 소속 사무장 F이 알려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F이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경위나 근거자료 등에 관하여 학인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견해표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가. 1) 나)항 및 가. 2) 다)항 부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잘못된 세무지도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원고가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 없이 단지 법무법인의 사무장에 불과한 F의 말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이르렀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의 주장은 '구 지방세법령 상 중과세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서 결국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주장에 다름 아닌 것으로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잘못된 설명을 듣고서 이를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 지방세법령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4] 참조)].

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이기홍

판사 백우현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별지1)

목 록

과세물건	구분	합계(원)	본세(원)	가산세(원)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취득세	467,043,200	412,000,000	41,200,000	13,843,200
	지방교육세	85,168,640	82,400,000		2,768,640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취득세	28,143,360	25,200,000	2,520,000	423,360
	지방교육세	5,124,670	5,040,000		84,67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별지2)

목 록

1. 인천 H 및 I 합계 1,473.8㎡ 및 그 지상건물 4,982.231㎡
2. 인천 L 및 M 합계 297㎡.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별지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리·장계리·매산리·장룽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9-27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